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03. 16.(목)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6
제출일자	2023.02.23
회부일자	2023.03.02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중찬)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경상북도교육감

2. 제안이유

-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단서 조항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 등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 조례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 1)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한 날부

터 10년까지로 한다.” 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변경하고, 단서조항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위법 개정 규정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로 변경한다.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의견없음
- 규제심사: 규제요인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해당부서의견 : 의견없음

6. 검토의견

가. 제안취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함

나. 주요내용

○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조항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으로 개정함

다. 종합의견

- 2013년 4월 11일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조례에 존속기한을 10년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기한이 2023년 4월 10일을 기하여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있음

-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기금법」 제4조제2항에서 존속기한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시행 2013. 3. 23.]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개정 2015. 7. 24.]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 본 조례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비용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출	비용자성사업	28,285,335	33,759,778	31,846,920	29,167,966	29,131,183	152,191,182
	기본경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소계 (1)	28,295,335	33,769,778	31,856,920	29,177,966	29,141,183	152,241,182
세입	교특전입금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20,000,000
	이자수입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소계 (2)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30,000,000
총 비용 (1-2)		22,295,335	27,769,778	25,856,920	23,177,966	23,141,183	122,241,182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세출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비용자성 사업	환경개선	1,288,078	5,937,251	5,650,017	5,465,070	8,501,287	26,841,703
	교육활동	23,859,561	25,621,847	24,070,653	21,869,583	19,165,026	114,586,670
	폐자학구학생	3,137,696	2,200,680	2,126,250	1,833,313	1,464,870	10,762,809
기본경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계		28,295,335	33,769,778	31,856,920	29,177,966	29,141,183	152,241,182

나. 세입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입	교특전입금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20,000,000
	이자수입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계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30,000,000

※ 산출기초

- 교특전입금: 연도별 분교장 통폐합 교당 20억씩 2교 통폐합 예상(연간 40억)
- 이자수입금: 연도별 통폐합지원금 예치금 2,000억 연리 1.0% 추산(연간 20억)

○ 2013년~2022년 연도별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2022년도말 결산기준, 단위: 천원)

연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 (a)	교특전입금	이자수입	계 (b)	학교전출금	반납금	기본 경비	
2013	22,000,000	22,000,000		0				22,000,000
2014	37,418,391	36,000,000	1,418,391	6,496,364	6,494,160		2,204	30,922,027
2015	28,301,332	27,000,000	1,301,332	6,646,076	6,643,761		2,315	21,655,256
2016	89,434,212	87,000,000	2,434,212	11,225,206	11,221,939		3,267	78,209,006
2017	95,820,035	93,220,000	2,600,035	19,465,193	19,462,426		2,767	76,354,842
2018	31,076,731	31,000,000	76,731	15,637,446	15,635,409		2,037	15,439,285
2019	32,565,494	32,000,000	565,494	25,075,876	25,073,221		2,655	7,489,618
2020	38,058,209	29,000,000	9,058,209	22,044,269	22,042,627		1,642	16,013,940
2021	14,663,638	10,373,098	4,290,540	16,616,105	23,776,672	-7,161,386	819	-1,952,467
2022	9,966,779	7,327,547	2,639,232	21,391,683	27,572,698	-6,203,782	22,767	-11,424,904
계	399,304,821	374,920,645	24,384,176	144,598,218	157,922,913	-13,365,168	40,473	254,706,603

-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 향후 5년간 30,000,000,000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비용자성사업 등 세출에 대한 비용추계액은 152,241,182,000원으로 세입추계액보다 세출 추계액이 높음

2022년말 잔액 기준 254,706,603,000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 비용추계서에 제시된 비용자성사업 및 기본경비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 매년 6,000,000,000원(교특전입금 4,000,000,000 원, 이자수입 2,000,000,000원), 향후 5년 동안 총 30,000,000,000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당초 2022년에는

16,170,561,000원(교특전입금 13,531,329,000원, 이자수입 2,639,232,000원)을
조성하였으나 6,203,872,000원을 반납하여 실질적 기금은
9,966,779,000원으로 이와 비교해 볼 때 향후 5년간 세입은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사료됨

※ 2022년 기준 16,170,561,000원(조성액 9,966,779,000원, 반납액 6,203,782,000원)

- 비용추계서에 따른 세출예산 중 환경개선, 교육활동, 폐지학구학생
등 비용자성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추계는 「2022년도 제3회 경상북
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 참고 : 「2022년도 제3회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 비용추계서와 2022년말 기금 잔액(254,706,603,000원)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세입과 세출 비용추계 내역을 반영하는 경우 2027년말
기금잔액이 132,465,421,000원이 발생함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르면¹⁾ 2028년
이후 세출예산 추계액을 108,180,289,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기금의 조성 규모를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2022년말 기금잔액(254,706,603,000) + 5년간세입추계(30,0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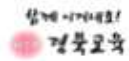
- 5년간 세출추계(152,241,182,000) = 132,465,421,000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¹⁾참고 : 「2022년도 제3회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참고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운용계획 확정 공문



경상북도교육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운용계획안 확정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나. 제3회 통폐합학교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행정과-8765, 2022. 11. 2.)

2.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자 합니다.

가. 기금명: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나. 기금내역

1) 기금 조성 규모

(금액단위: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⑧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예정액 ⑧=③+④
	조성계획⑤	집행계획⑥	증 감 ④=⑤-⑥	
251,809,477	8,611,994	28,295,335	-19,683,341	232,126,136

2) 수입 및 지출 계획

(금액단위: 천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목	'23년 수입액	'22년 수입액	증감	항목	'23년 지출액	'22년 지출액	증감
합 계	260,421,471	274,819,561	-14,398,090	합 계	260,421,471	274,819,561	-14,398,090
교 특 회 계 전 입 금	4,000,000	6,000,000	-2,000,000	비 용 자 성 사 업 비	28,285,335	27,018,640	1,266,695
예 치 금 회 수	251,809,477	264,359,240	-12,549,763	기 본 경 비	10,000	10,000	0
이 자 수 입	4,611,994	4,460,321	151,673	예 치 금	232,126,136	247,790,921	-15,664,785

3)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금액단위: 천원)

정책사업명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전년도 기금운영계획		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1,288,078	4.6%	1,900,908	7.0%	-612,830
교육활동 지원사업	23,859,561	84.3%	23,074,018	85.4%	785,543
폐지학교 학구 학생지원	3,137,696	11.1%	2,043,714	7.6%	1,093,982
기금운용 경비	10,000	0.0%	10,000	0.0%	0
합 계	28,295,335	100%	27,028,640	100%	1,266,695

붙임 1. 제3회 통폐합학교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부.

2. 제3회 통폐합학교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자료(확정) 1부. 끝.

주무관 **김주오** 학교육성담당 **김인찬** 행정과장 **출장** 행정국장 **최상수**

부교육감 2022.11.02.
송기동

협조자

시행 행정과-8787 () 접수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풍천면) / <http://www.gbe.kr/>

전화 054-805-3723 /전송 054-805-3729 / ojuju1020@gyo6.net / 비공개(5)

2022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일부 발췌(2028년도~2032년이후)

[2022년도 제3회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218page-통폐합학교지원기금 단위사업별 중장기 예산집행 계획]

○ 정책사업 ○ 단위사업	2028년도 예산(계획)	2029년도 예산(계획)	2030년도 예산(계획)	2031년도 예산(계획)	2032년도 이후 합계	2028년~2032 년도이후 합계
합 계	22,284,326	25,532,315	22,197,421	19,978,679	18,187,548	108,180,289
1.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5,100,671	6,268,700	5,117,317	4,605,585	4,191,083	25,283,356
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4,547,671	5,549,859	4,319,317	3,887,385	3,537,521	21,841,753
나. 학생 임시수용시설 설치	0	0	0	0	0	-
다. 급식시설확충 및 기구 구입	553,000	718,841	798,000	718,200	653,562	3,441,603
2. 통합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	16,179,245	18,110,416	16,275,104	14,647,594	13,329,310	78,541,669
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3,070,551	3,172,839	2,602,346	2,342,111	2,131,321	13,319,168
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2,423,850	2,680,717	2,336,670	2,103,003	1,913,733	11,457,973
다. 교재, 교구, 도서 개발·운영·구입	1,807,682	2,090,826	1,832,044	1,648,840	1,500,444	8,879,836
라. 기숙사 운영	1,855,000	2,172,793	2,234,888	2,011,399	1,830,373	10,104,453
마. 학교운동부 지원	40,600	73,917	34,000	30,600	27,846	206,963
바. 도서관운영 지원	428,000	467,238	421,000	378,900	344,799	2,039,937
사. 정보화기기보급 및 관리	673,840	899,072	670,306	603,275	548,981	3,395,474
아. 통학차량 임차·구입·운영비	2,140,400	2,470,696	2,775,449	2,497,904	2,273,093	12,157,542
자. 학교장이 지원 하고자 하는 수익자 부담경비	3,739,322	4,082,318	3,368,401	3,031,561	2,758,720	16,980,322
3. 폐지학교 학구 학생 지원사업	994,410	1,143,199	795,000	715,500	657,155	4,305,264
가.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	52,910	46,806	16,000	14,400	13,104	143,220
나. 학생교육비	941,500	1,096,393	779,000	701,100	644,051	4,162,044
4.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가. 기금관리 보조인력 인건비	0	0	0	0	0	-
나. 기금운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0	0	0	0	0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경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라. 계획수립, 성과분석 등 그 밖의 경비	0	0	0	0	0	-
5. 기타	0	0	0	0	0	-
가. 군위-대구편입전출금	0	0	0	0	0	-